

## 기업동산 등의 담보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업(법인에 한하며 이하 같다)이 보유하는 기계·기구, 재고자산 등의 동산 및 매출채권,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담보목적물”이라 함은 기업이 소유하는 기계·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 원료·반제품·완제품 기타 재고자산 등의 동산(이하 “기업동산”이라 한다) 중에서 전자식별표 등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기업이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을 말한다.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보관증 등의 증서가 작성되어 있거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된 것은 제외한다.
2. “담보계약”이라 함은 기업이 채권담보를 위하여 동산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등기사항”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4. “전자식별표”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에 부착하거나 내장하여 당해 물건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전자적으로 당해 정보를 판독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태그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유가증권”이라 함은 공인된 증권등록기관의 해당 계좌에 전자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증권을 말한다.
6. “매출채권”이라 함은 기업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명채권으로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기업이 보유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현행 법률로써 보호받는 재산권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이 법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에 동산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며, 이 법에 의한 등기사항은 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한다.
- ② 기업동산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동산담보의 취지, 담보목적물의 성질이나 등기방법에 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34조 내지 제40조의 규정 및 부동산등기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 ③ 매출채권의 양도 및 지적재산권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제2장 기업동산담보의 등기

### 제4조 (동산저당권의 설정)

- ① 채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기업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담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담보목적물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채무자의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3.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4. 피담보채권
  5. 등기의 존속기간
- ② 제1항제4호의 피담보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괄하여 특정할 수 있는 채권,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하거나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발생할 것이 확실한 채권, 외국법에 의하여 인정된 채권도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 ③ 제1항제5호의 존속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0년을 초과하여 존속기간을 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 (동산저당권의 등기)

- ① 전자식별표가 부착 또는 내장된 기업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동산저당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동산저당권의 설정 및 변경등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1. 제4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된 사항
  2. 등기번호
  3. 등기연월일

#### 4. 등기의 유효 또는 말소 여부

- ③ 제2항의 등기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등기사항을 전자식별표에 기록하여 담보목적물에 부착하거나 내장시킨 경우에는 전자식별표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거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으나 반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⑤ 전자식별표가 제거되었거나 그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담보목적물의 동산저당권자는 이를 선의로 과실없이 취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제6조 (근저당)

이 법에 의한 동산저당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3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 (연장등기)

채권자 및 채무자가 동산담보 등기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등기관은 제4조제3항에 반하지 않는 한 등기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당해 등기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취지
- 2. 연장된 존속기간
- 3. 등기번호
- 4. 등기연월일

#### 제8조 (말소등기)

① 채권자 및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산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1. 동산저당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 2. 담보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 기타 원인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을 것
- 3.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한다.

- 1. 당해 등기를 말소하는 취지
- 2. 등기원인 및 그 일자
- 3. 등기번호
- 4. 등기연월일

③ 피담보채권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일부의 채권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된 사항
2. 당해 등기의 일부를 말소하는 취지
3. 말소등기를 하는 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것
4. 말소 후의 피담보채권의 총액

#### 제9조 (담보관리인)

동산저당권자는 그를 대신하여 담보목적물을 관리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담보관리인은 동산저당권자를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검사하고 채무자의 약정위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동산저당권 및 담보목적물의 양도)

- ① 동산저당권자는 제3자에게 피담보채권과 함께 동산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다.
- ② 채무자는 통상의 영업과정에서 담보목적물을 양도할 수 있으며, 동산저당권자는 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의 양수한 자는 동산저당권을 부담한다. 다만, 전자식별표가 부착 또는 내장되어 있지 아니한 담보목적물에 동산저당권이 없다고 믿었거나 동산저당권자의 양도허락이 있었다고 믿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산저당권 및 담보목적물의 양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1조 (전자등록 유가증권에의 준용)

제4조 및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등록된 유가증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의 “전자식별표가 부착 또는 내장된 기업동산”은 “공인된 증권등록기관의 해당 계좌에 전자적으로 등록되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에 소정 사항이 기재된 유가증권”으로 한다.

### 제3장 채권양도의 등기

#### 제12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특례)

- ① 기업이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당해 채권의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기연월일을 확정일자로 한다.
- ② 제1항의 채권양도 등기가 된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제17

조에서 정한 등기사실증명서를 교부하여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 제1항과 같은 효력이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 당해 채권의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를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양도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의 “양도인”은 “양수인”으로, “양수인”은 “양도인”으로 한다.

#### 제13조 (채권양도의 등기)

- ① 매출채권의 양도에 따른 등기는 양도인 및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 1. 양도인의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2. 양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
  - 4. 등기원인 및 그 일자
  - 5. 양도된 채권의 총액
  - 6. 양도된 채권의 채무자 기타 양도된 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7. 채권양도 등기의 존속기간
  - 8. 등기번호
  - 9. 등기연월일
- ② 제1항제7호의 존속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50년을 초과하여 존속기간을 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채권양도의 등기가 되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이 다시 양도를 하는 경우 기존등기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신등기를 하는 경우 신등기의 존속기간이 만료기간이 기존등기의 존속기간 만료된 후에 도래하는 때에는 기존등기의 존속기간이 신등기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날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 ④ 채권양도의 등기가 되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이 다시 양도를 하고 당해 등기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등기의 존속기간이 무기한인 것으로 본다.

#### 제14조 (준용규정)

- ①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채권은 이 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채권양도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 ②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채권양도 등기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등기관은 제13조제2항에 반하지 않는 한 제7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 ③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채권양도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산저당권의 발생” 또는 “담보계약”은 “채권양도”로, “피담보채권”은 “양도된 채권”으로 한다.

#### 제15조 (채권질에의 준용)

제11조의 규정은 기업이 매출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의 양도”는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으로, “양도인”은 “질권설정자”로, “양수인”은 “질권자”로, “양도된 채권”은 “질권이 설정된 채권”으로, “채권양도 등기”는 “질권설정 등기”로 한다.

### 제4장 등기부의 편철 및 관리

#### 제16조 (등기부)

- ① 이 법에 의한 기업동산 및 매출채권에 관한 등기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등기부에 통합하거나 또는 별도의 등기부에 이를 편철한다.
- ② 등기부에는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을 기재하며, 이해관계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7조 (등기사실증명서 등의 교부)

이해관계인은 등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등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등기사실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8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신청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인지를 첩부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동산저당권 등기, 채권양도 등기, 질권설정 등기, 변경등기, 연장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등기사실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 제5장 채권자의 채권회수 노력

제19조 (채무불이행과 동산저당권의 실행)

- 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산저당권자는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 동산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동산저당권자가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담보목적물에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동산저당권자는 동산저당권의 실행을 통지한 후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거나 담보목적물의 보존·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동산저당권자는 동산저당권 실행을 통지한 후 담보목적물을 경매에 붙이거나 일정 기간 경과한 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소에서 공정한 가격으로 환가처분할 수 있다.

제20조 (동산저당권자의 담보목적물의 취득과 정산의무)

담보목적물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지나치게 헐값으로 매각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산저당권자는 이를 취득할 수 있으나, 피담보채권의 초과액은 채무자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21조 (담보목적물 처분대금의 배당)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은 비용을 공제한 후 순위에 따라 동산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제22조 (법원에 의한 동산저당권의 실행)

동산저당권의 실행을 통지한 후 채무자 기타 담보목적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동산저당권 또는 실행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고 법원에 동산저당권 실행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인의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담보목적물을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 (동산저당권의 소멸)

피담보채권의 소멸, 담보목적물의 멸실, 동산저당권 소멸의 합의가 있는 경우 당해 동산저당권은 소멸한다.

제24조 (손해배상청구권)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목적물에 부착 또는 내장되어 있는 전자식별표를 위조·변조, 개조 또는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시킴으로써 동산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25조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의 특칙)

지적재산권의 담보제공은 해당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해당 담보권의 실행 및 사후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담보목적물은 해당 지적재산권으로 보며, 담보목적물의 경매 또는 환가처분은 해당 지적재산권의 성격 및 내용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26조 (정부의 협조의무)

이 법에 의한 담보목적물 또는 지적재산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소에서 공정한 가격으로 환가처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는 관련기관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감정평가의 지원, 매입기금의 설치, 해외 마케팅의 협력 기타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 ①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담보목적물은 이 법에 의한 전자식별표를 부착하거나 내장하고 설정등기를 마친 후 당해 공장저당권의 목록에서 제외하는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종전의 공장저당권의 순위를 유지한 채로 이 법에 의한 동산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때 설정등기의 연월일은 공장저당권의 등기연월일로 한다.
- ② 집합물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 담보목적물은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에 의한 전자식별표를 부착하거나 내장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 제1순위의 동산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때 설정등기의 연월일은 양도담보 계약체결일로 한다.
- ③ 기업동산 중에서 리스의 목적이 된 물건은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이 법에 의한 동산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 기업동산 등의 담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 제1조 (목 적)

이 영은 「기업동산 등의 담보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전자식별표)

기업동산 등의 담보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라 함은 RFID태그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물건을 특정할 수 있고 해당 정보를 판독하고 기록·저장할 수 있는 소재 기타 장치를 당해 물건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즉시 채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제3조 (담보목적물의 특징)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담보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제품의 제작업체, 모델번호, 제작연도, 동일 제품인 경우에는 그 서열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일련의 기호를 말한다.

## 제4조 (동산담보의 설정 또는 변경등기)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라 함은 기업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등기 또는 기존 등기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등기는 해당 등기사항을 전자기록매체를 이용하여 등기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전자식별표에 기록하거나 변경하는 동시에 등기부에 그대로 기재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된 사항이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 (전자등기의 방법)

법 제5조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라 함은 개방형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적으로 등재를 신청하거나 기재사항을 조회·열람하고 각종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제6조 (동산저당권 말소의 기록)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라 함은 동산저당권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이 채무자로 하여금 당해 담보목적물에 부착 또는 내장된 전자식별표

에 그 취지를 기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7조 (채권의 특정)

법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채권을 특정할 수 있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표시, 채권발생의 원인 기타 정보를 말한다.

#### 제8조 (변경등기사항의 기록)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라 함은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당해 담보목적물에 부착 또는 내장된 전자식별표에 그 취지를 기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9조 (전자등록 유가증권에 관한 등기)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라 함은 공인된 증권등록기관에 전자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가증권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또는 기존 등기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해당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등기부에 신도시 확정기재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제10조 (거래소)

법 제19조제3항 및 제26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소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협조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전문적인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거래소를 말한다.

#### 제11조 (정부의 협조사항)

정부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할 사항은 담보목적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특허청이 각각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담보목적물 또는 지적재산권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거래소에서 용이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에 의한 서비스에 대하여는 실비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온라인 및 오프라인 거래소의 설치 및 관련 정보·웹사이트의 유기적인 연결
2. 거래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갱신
3. 전문가 풀의 구성에 의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의 지원
4. 경매 등의 절차에서 처분되지 아니한 담보목적물 또는 지적재산권을 매입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용

5. 제4호의 담보목적물 또는 지적재산권을 종류별로 집합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각종 지원
6. 담보목적물 또는 지적재산권을 해외에 매각하기 위한 마케팅의 협력
7. 제1호 내지 제6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제12조 (대법원규칙 등에의 위임)

법 또는 이 영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또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규칙으로 각각 규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